

제27대 회장선거 관련 공지사항 안내문

(근거: 2020년도 제5차 이사회 심의, 의결/2020.11.28. 천안 상록리조트)

1. 우리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 변경사항

- 가. 제4조 선거인, 기존 만19세 → 만18세로 변경(체육회 지침)
- 나. 나머지 사항은 대한체육회 승인을 받은 후 본 협회 홈페이지 업로드 예정

2. 후보자등록의사 제출

- 가. 기한: 2020년 12월 9일 17:00 사무처 도착
- 나. 방법: 팩스, 이메일, 우편
- 다. 접수 확인: 송부 후 확인전화(담당 부장 현경오)
- 라. 근거: 대한체육회 지침 및 중앙협회장 임기만료 전 50일까지
- 마. 양식: 붙임 양식

3. 기타 선거관련 사항

가. 선거운동 방식

구분	기존 규정('16년 선거)	변경 규정
선거공보	가능	가능
전화(전화 또는 문자)	가능	가능
정보통신망(이메일, SNS 등)	가능	가능
<u>윗옷 및 어깨띠</u>	불가	<u>가능(신설)</u>
<u>명함</u>	불가	<u>가능(신설)</u>
<u>후보자 정책토론회</u>	관련 근거규정 없음	<u>가능(신설)</u> 출마후보자 모두 동의 시 진행 가능
선거당일 후보자 소견발표	가능	가능

나. 금지행위

- 위탁선거법 개정('16.12.)으로 금지행위에 처벌조항 적용 강화
(중전) 금지행위에 대해 규정상 제재조치만 적용 → (변경, '16.12~) 위탁선

거법 상 의무금지행위의 경우 법적처벌(벌금형 ~ 징역형)까지 적용

구 분	관련내용	현행 규정	주요 변경 내용
금지 행위	매수 및 이해유도 금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(가족, 소속단체)에 대해 금전·물품·향응 제공, 제공의사 표시 및 약속 금지 ▪ 후보자 등록 저지 및 사퇴 목적으로 상기행위 금지 ▪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물 또는 돈봉투 등의 금품 운반 행위 금지 	
	허위사실 공표, 후보자 비방 금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후보자(배우자, 직계존속, 형제자매) 관련 허위사실 공표 금지 ▪ 공연한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등 비방 금지 	
	호별방문 제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선거인 호별 방문, 특정장소 소집 금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기존 호별 방문 제한(좌동) ▪ 공개된 장소 방문은 가능
	기부행위 제한	<신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(배우자, 직계존속, 형제자매 등)·관련단체에 금전·물품·재산상 이익 제공(약속) 금지 ▪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 기간 중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(수령), 지시·권유·알선 금지
	정당 등 표방 금지	<신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선거운동(소견발표)시 특정 정당 지지·반대·당원경력 표방 금지
	사위등재 금지	<신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선거인명부 허위작성 및 선거인명부 고의 누락 금지
	사위투표 금지	<신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성명 사칭, 신분증 위조 또는 변조하여 투표하는 행위 금지
	선거사무 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·교란 금지	<신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선관위, 사무처 직원 등 선거사무종사자 폭행·협박·유인·체포·감금 행위 금지 ▪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·설비·장비 등 또는 선거인명부 은닉·파손 등 금지
임직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	<신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선거운동 기획 참여, 실시 관여 금지 ▪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 조사·발표 금지 ▪ 임기만료일 전 50일(또는 임원 후보자 등록의사 제출시)부터 임직원의 아래 해당 행위 금지 	

구 분	관련내용	현행 규정	주요 변경 내용
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특정후보자 업적 홍보행위 -사업계획 상 예정된 사항 이외 행사 개최 및 후원 -사업계획 상 예정된 사항 이외 사업실적·활동상황 등 홍보물 발행 금지 ▪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 외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출장 금지
	선거일 후 답례금지	<신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선거일 이후 당선축하·낙선위로 목적의 금전·물품·향응 제공 및 선거인 모임 금지